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83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윤호중·문진석·조인철

윤종군 • 홍기원 • 이기헌

정성호 · 조승래 · 이병진

안도걸 · 한민수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그 파급력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으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계획의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

법률 제 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 20년 단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을 "기본계획안을"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시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에"를 "시행계획에"로, "시행계획"을 각각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시행계획에"를 "추진계획에"로, "시행계획을"을 "추진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이 시행계획"으로, "시행계획에"를 "추진계획에"로, "시행계획에"를 "추진계획에"로, "시행계획의"를 "추진계획의"로, "기본계획에"를 "시행계획에"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행계획에"를 "추진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행계획의"를 "추진계획의"로 한다.

- 이 경우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27조 중 "기본계획·시행계획"을 "기본계획·시행계획·추진계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 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의2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로 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으로 한다.

- 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시 행계획"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	획) ①
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을 설정하고, 이에 <u>따른</u> 저출산	<u>따라 20년 단</u>
•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	위의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	
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2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	<u>7]</u>
<u>년마다 기본계획안을</u> 작성하고,	본계획안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	
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0조의2(저출산・고령사회시행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저출산 · 고령사
	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u>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u>

제21조(연도별 <u>시행계획</u>) ① 중앙 저행정기관의 장은 <u>기본계획에</u>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기본계획</u> 및 중앙행정기관의 <u>시행계획에</u>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u>시행계획에</u>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u>시행계획을</u>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u>시행계획이 기본계</u> <u>획</u> 및 중앙행정기관의 <u>시행계</u> <u>획에</u>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u>시행계획의</u> 이행상황을 <u>기본계획에</u>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u>시행계</u> 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어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u>
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베21조(연도별 <u>추진계획</u>) ①
<u>시 행계획에</u>
추진계획
<u>추진계획</u>
시행계획
<u>추진계획에</u>
추진계획을-
②
추진계획이 시행계
<u>획추진계</u>
획에
<u>추진계획의</u>
- <u>시 행 계 획 에</u>
③
<u>추진</u>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 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 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u>후단 신설></u>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4
<u>추진계획에</u>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③ (생략)
-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u>5. · 6.</u> (생 략)
 - ③ ~ ⑥ (생 략)
-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u>기본계</u> <u>획·시행계획</u> 및 이에 대한 평 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한다.</u> ⑥ 추진계획의
<u> </u>
<u>.</u>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기본계획, 시행 계획 및 추진계획
 (최체기 기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u>6. · 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국회보고) <u>기본계</u>
<u>획·시행계획·추진계획</u>